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04

프 랑 스

1. 수입관련 제도

■ 무역정책 및 수산물 수입제도 소개

- EU 수산물 무역관련 규정
 - 유럽연합의 수산물(양식 포함) 및 수산 가공품 수입에 관한 공통법은 27개국 회원국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 회원국 외의 제 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유럽연합에서는 각국을 상대로 특별 수입규정 또는 관련 서류(예: 증명서)를 추가로 요청함
 - SANCO (La Direction générale de la Santé et Consommateur de la Commission)는 EU로 수출되는 식품(수산물 포함)에 대한 안정성 및 위생을 관리하고 있음³⁾
 - EU 내 수산물(양식 포함) 및 수산가공품 수출을 위해서는 EU에서 지정한 국경검역소를 반드시 통과하여 http://ec.europa.eu/food/international/trade/im_cond_fish_fr.pdf_fr.pdf인지 진위여부를 판별하여 최종 수입 허가를 결정함⁴⁾
 - 국경검역소에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위생검역증명서(Health Certificate)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 수입관세는 모든 EU 역내에서 식품수입에 따른 관세는 동일하게 부과됨
 - 역내관세에 대한 관세율은 EU집행위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http://europa.eu.int/comm/taxation_customs/dds/cgi-bin/tarchap?Lang=EN)
 - EU집행위는 회원국 국경의 세관에서 살아 있는 동물, 동물가공식품 및 냉동 식품 수입 검사를 위해 지정된 검역소(국경검역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입제도
 - 유럽연합은 세계최대의 수산물 수입국으로 관련 수입제도는 연합국 모두에 계 일괄적으로 적용됨
 - 제 3국과의 교역은 유럽연합의회에 의해 일괄 규정되고 인증됨

3) 수산물(양식 포함) 및 수산 가공품 수입에 대한 법률은 EU내 27개국으로 수입되어 지는 제품의 위생, 소비자 건강 및 동물의 건강상태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음
(출처: http://ec.europa.eu/food/international/trade/im_cond_fish_fr.pdf)

4) 관련 EU 규정: Directive 97/78/EC,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36/2004, Article 14 of Regulation (EC) No 882/2004

- EU 동물(수산물 포함) 검역지침 제정⁵⁾
 - 수산제품은 위생문제가 가장 중시되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EC 각 멤버들 간에 있어서 서로 상이한 위생조건을 설정해 둠으로써 역내 자유로운 교역에 장애가 되었음
 - 유럽의 경제공동체 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EU 각국은 역내 내수시장의 형성에 역점을 두고 서로 다른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에 의견을 모아 이 지침을 제정함

■ 수입허가 및 수입쿼터

● 수입허가

- 유럽연합에 수입하려는 모든 수산물은 EU가 인정하는 수출국의 소관당국에 의한 공식적인 승인이 있어야 함. 이는 유럽연합국으로의 수출에 가장 필수적인 절차로 EU의 인정을 받은 기관은 수산물의 생산부터 가공과정까지 필요한 모든 검역과 위생검사를 진행해야 함
- 수입조건에 대한 쌍방의 모든 협상은 양국의 해당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각 수출국 소관당국이 갖추어야 할 주요 조건
 - 수출국에는 상품의 모든 생산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해당 관청이 있어야 함. 이 해당관청은 유럽연합의 수산물 위생기준에 맞는 위생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을만한 규모의 조직과 충분한 권력을 갖추어야 함
 - 어패류 및 살아있는 어류는 동물위생규정을 준수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모든 위생검사에 전문 수의사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필수적인 절차들이 이행되어야 함
 - 해당관청은 공공위생과 건강에 대해 EU가 요구하는 조건(어획시스템, 생산 장소, 운반기관 및 보관 장소 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함. 이는 생산품의 제품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전염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어패류에 대한 세부 검사 조항들을 만족시켜야 할 것. 제품들은 허가된 장소에서만 생산, 수출할 수 있음. 해당 관청은 이 생산지에 대한 모든 조건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5) 출처: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5016&pageFlag=A>

- 양식 수산물의 경우 금속, 전염인자, 살충제 폐기물, 수의약품 등이 갖추어진 검사 프로그램이 있어야함
- 해당 관청은 매 해마다 유럽연합의 규정에 따라 검사 프로그램을 정비해야 함
- 해당 관청은 정기적으로 검역을 실시하고 인증서를 보증해야 함. 각 국 관청의 리스트는 유럽연합의 인터넷사이트 해당 페이지에 게재됨
- 공식 인증된 대 EU 수출회사 (Approved exporter)로 등록하는 절차
 - 모든 수산물의 수출국과 수출회사는 수출 품목에 관해 유럽연합의 허가를 받아 유럽연합에서 작성한 명단(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유럽연합에 수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제 3국의 해당 관청(유럽연합에 공식 승인된 기관)은 유럽연합위원회의 소비자 건강보호국에 공식요청서를 제출함. 이 요청서는 해당관청이 유럽연합이 정한 모든 규정들을 존중하고 있음을 증명함
 - 유럽연합위원회의 소비자 건강보호국은 요청서에 따라 해당 관청으로 질문지를 보냄. 해당관청은 질문지의 내용에 따라 유럽연합의 규정과 본 관청에 대한 정보, 위생 규정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기재해야 함
 - 양식 수산물의 경우 인증된 폐기물 감찰 프로그램 역시 제출해야 함
 - 서류들을 검토한 후 식품 및 수의사 사무관이 현장의 조사를 위해 파견될 수 있음. 위험수위가 높은 수산물의 경우 필수적인 절차임
 - 검사결과에 따라 소비자 건강보호국은 해당국가에 적용할 수입품목 및 조건들을 결정, EC 집행위원회에 제의
 - 검토 절차를 마친 뒤 EU 집행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수입허가를 결정, 통보·허가를 받은 국가의 수출업자 리스트는 다음의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 참조
http://ec.europa.eu/food/food/biosafety/establishments/third_country/index_en.htm
 (한국은 수산물관련 323개의 관련 공장, 냉동기, 가공지 등이 등록되어 있음)

● 수입쿼터

- 한국에서 EU에 수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관한 EU의 수입쿼터는 현재 없음

■ 수산물 수입절차

- EU 관련 법규: Directive(Direction) 97/78/EC
 - EU 내 지정된 국경 검역소에 제 3국에서 오는 수입품(수산물) 도착
 - 도착 예정일 알리기: 국경 검역소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되는 제품의 도착 예정일 (Arrival notice)을 알리는 것이 좋음
 - 수입되는 제품들은 EU 수의 법률에 따라 관련 서류 (증명서 등⁶⁾)과 함께 국경 검역소의 검역을 시작함
 - 수입되는 제품은 반드시 EU로부터 승인된 수출국 및 수출회사의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입 불가
 - 국경 검역소의 검역을 통과한 후 최종 도착지로 이동
- EU 관련 법규: Article 14, Regulation (EC) No. 882/2004
 - 국경 검역소에서는 동물성 상품 (food of animal origin)에 대해 식품 위생 및 동물 보호법 등의 이유로 경우에 따라 추가의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음 예) 식품 첨가물, 식품 조사 (food irradiation)⁷⁾

■ 통관 및 검역제도

- 통관서류
 - 서류제출 관련 법규: 1664/2006/EC
 - 수산물의 경우 수출입 허가를 사전에 받은 업체만 수출입을 할 수 있으며 수입업체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2007년 7월 1일부터 수산물(fishery)과 쌍각조개류(bivalve molluscs), 극피동물(echinoderms), 피막동물(tunicates), 바다 복족류(marine gastropods) 등의 해산물을 EU에 수입하기위해 1664/2006/EC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와 위생 검역증명서(health certificates)를 제출해야 함. 신 위생검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관에서 통관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설령 허가받은 수입업체라 하더라도 주의요망

6) 위생 증명서 (Health certificate, 반드시 수출국 관련 기관에서 발행되어야 함), 잔류량 검사 서류(residue control, 양식 수산물의 경우)

7) 식품에 감마선을 쬐는 식품 보존법

- 위생검역증명서 (Health Certificate)
 - 관련 법규: Council Directive 96/93/EC
 - 관련 제품: 동물 수입 또는 동물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제품 (animal products), 살아 있는 수산 제품 및 양식 수산 어류, (수산 어류)알 등이 EU내에 수입되기 위해서는 본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
 - 본 증명서는 전문 의사 또는 전문 검역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함
 - 증명서 원본은 반드시 수입되는 물건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 그 밖에 통관에 필요한 서류
 - 어획 증명서 또는 가공 증명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품목에 따라 제출 여부 결정
 - 기타 무역서류
- 위생 규정 및 첨가물 조항
 - 위생 규정 관련 법규: Article 8, paragraph 3 of Directive 93/43/EEC
 - 첨가물 관련 법규: Commission Decision(EC) 2004/432/EC, Article 14 of Regulation (EC) No 882/2004
 - 농약 (pesticides) 사용 관련 법규: Regulation (EC) No 396/2005, Commission Regulation (EC) 1881/2006⁸⁾
 - 제 3국가에서 EU 내로 수입되어 지는 상품은 푸드 위생 규정에 의거, HACCP의 기본규정에 따라 위생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⁹⁾
 - EU 법상 수출국 내에 식품 위생 및 첨가물 관련 검사 기관을 갖추어 수출될 상품에 관해 모니터 링 및 관련 프로그램(실험실 포함)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음
 - 동물성 원료 식품의 식품 위생 및 동물의 건강상태와는 별도로 식품 첨가물, 식품과 접촉된 물질, 식품방사성 처리여부 등을 추가로 관리함
 - 양식 수산물의 경우 국경 검역소에서 첨가물 조항 (residue control)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8) http://ec.europa.eu/food/plant/protection/pesticides/database_pesticide_en.htm 에서 각 상품 별 최대 허용치에 대해 검색할 수 있다

9) 2006년 1월 1일 부터 EU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국은 HACCP에 맞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갖추 것을 의무화하였음

(참고자료: http://ec.europa.eu/food/international/trade/guide_thirdcountries2009_en.pdf)

- 한-EU FTA 협정문 제 5장의 제 5.8조 ‘동물 및 식물 위생과 연관된 조치’ (Article 5.8: Measures Linked to animal and Plant Health)에서도 위생에 관해 언급하고 있음¹⁰⁾

● 국경 검역소란? ¹¹⁾

- 정식 명칭: Border Inspection Post (BIP)
- 관련 법규: Decision 2009/821/EC¹²⁾
- BIP 는 공식 수의사 협회 당국 소속으로 EU로 수입되어 지는 식품의 위생 및 건강상태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기관임
- 동물 및 동물성 원료 (products of animal origin)를 사용한 제품이 EU내 수입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국경 검역소에서 수의 검역을 받아야 함
- 수의 검역은 통상 기본 서류 심사, 제품 확인, 신체검사 등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실제 물품검사가 있을 수 있음
- 살아있는 동물인 경우 BIP 도착 24시간전에 미리 통지를 해야 함
- 국경 검역소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품은 모두 폐기 되거나 60일 안에 조건부 재전송 (수출국으로 되돌아 감)
- BIP 검사를 통해 동물 및 인류의 건강을 해치고 위반한다고 판명되는 경우 수입되어지는 상품의 소유권은 EU의 관련 당국으로 넘어가게 되며 즉시 폐기 됨

● 원산지 제도

- EU 원산지 규정은 크게 3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음

비특혜 원산지 (Non-preferential origin)	특혜 원산지 (Preferential origin)	관세동맹 (Customs Un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economic)’의미의 원산지(Origin) ■ 상업 정책적인 의도를 가진물건의 원산지를 뜻함 예) 반덤핑, 관세할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법에 있어 혜택을 받음 (한국 포함) ■ EU와 특정 협약을 맺어 관세 혜택, 무관세와 같은 혜택이 있음 ■ 관세분류표 (tariff classification)가 수출/입 관세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 예) CN co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키, 안도라, San Marino 해당

10) 참고자료: http://www.fta.go.kr/new/pds/fta_korea/eu/kor_eu_list2.html

11) 참고자료: http://ec.europa.eu/food/animal/diseases/traces/index_en.htm

유럽 연합 국가 내 국경 검역소 검색: http://ec.europa.eu/food/animal/bips/bips_contact_en.htm

12) http://ec.europa.eu/food/animal/bips/approved_bips_en.htm

● 한국과 검역 규정 협의 사항¹³⁾

- 한-EU협약에 의한 검사 품목
 - 활이매패류, 극피류, 피낭류 및 해양복족류 (수산물 및 수산양식제품)
- 전염병 검사

구분		전염병
어류	11종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잉어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참돔 이리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유행성괴양증후군, 자이로닥틸루스증(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 바이러스성신경괴사증, 전염성채장괴사증, 돌돔이리도바이러스병
패류	5종	보나미아감염증(보나미아오스트레, 보나미아익시티오사), 마르테일리아감염증(마르테일리아레프리젠스),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전복바이러스성폐사증
갑각류	9종	가재전염병, 구상바쿨로바이러스증, 사면바쿨로바이러스증,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노란머리병, 흰반점병, 타우라증후군, 전염성근괴사증, 흰꼬리병

-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생산, 가공시설로 등록된 공장(선박포함)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에 한함
- 수산 제품의 포장에는 국가명, 생산, 가공 시설의 등록번호 표시

● 통관거절시 제재조치

- 일반적인 통관 거절 사유
 - 증명서의 내용 및 실제 제품 내역이 다름
 - HS 품목 코드와 제품이 다른 경우, 잘 못된 품목 코드 기입 등
- 일반적인 제재 조치
 - 벌금
 - 수입 상품 전량 폐기 또는 반송조치(반품처리)
 - 예) 세관에 의해 무작위로 선정, 샘플링 검사를 통해 EU내 수입 불가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 전량 폐기 조치
- 서류(증명서 등) 자체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경우 수출국의 증명서 발급 담당 기관에 연락하여 문제 해결

13) 국립수산물안전부 홈페이지 참고 (www.nfis.go.k)

■ 수산가공품 라벨링 규정

- 법률에 의한 표시사항 (의무 표시사항)
 - 관련 법규
 - 79/112/EEG, 86/197/EEG, 89/395/EEG, 91/72/EEG, 97/4/EEG, 79/112/EEG, 90/496/EEC, 2000/13/EC
 - 2008년 EU 집행위는 식품 라벨링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채택
 - 원산지 표시는 국제 규정 (WTO, Codex)에 입각해야 하며 성분 원산지와 완제품 가공지가 다를 경우에 이를 표시해야 함
 - 의무사항
 - 수출국 언어, 영어 표기
 - 기본 표기 내용
 - 순 중량 (Net weight)
 - 상품명
 - 유효 기한 (la date de péremption) 및 저장조건
 - 성분 리스트 (색소 포함, 알레르기 유발 성분 포함, 방부제 및 첨가물 내역 포함)
 - 제조시설(Batch) 표기
 - 제조자 (Nom du fabricant : 수출업자 혹은 포장업자의 이름 및 주소)
 - 제조 일자 (Date de fabrication)
 - 제조국 (Marque de conformité nationale)
 - 그 밖: 사용방법 (사용방법이 표기되지 않고 조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알코올 함량 (알코올의 함량이 전체 함량의 12% 이상 차지하는 경우 실제 알코올 함량), 영양에 대한 정보 (영양 및 건강과 관련된 선전을 라벨에 표시할 때 식품의 열량과 영양성분을 포장에 표시해야 함)
 -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정보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 글자 크기 3mm 이상으로 되어야 함
- 알레르기에 대한 표시사항
 - EU에서 2008년 발표한 식품 라벨링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알레르기 성분에 대한 정보기제 의무를 포장된 식품에서 미리 포장되지 않은 식품까지

확대 함 (과거 규정에서는 미리 포장된 모든 식품의 라벨링에만 알레르기 성분을 알리는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였음)

- 식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성분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쉬운 장소에 표시. 또는 소비자들의 요청할 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성분
 - 생선 (모든 종류의 생선과 제품)
 - 갑각류 (lobster -랍스터, crab -게, prawns -새우, langoustin -닭새우 포함)
- 한국 인증마크 표시 가능여부
 - 한국 인증마크 표시에 관해 특별한 제재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마크가 아니면 EU로 수출 시 특별한 혜택이 없음

■ 기타 비관세 장벽 및 수산물 통관 시 주의사항

- 수산물 수입바이어 인터뷰
 - 수산물 수입 바이어 : 'I' 업체(네덜란드), 구매팀장
 - 회사 소개
 - 네덜란드에 자체 보관창고를 확보하여 업체의 그룹 계열사에 물품공급
 - 유럽 내 한국식품의 공급에 주력하고 있으며 직영 도·소매 매장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으로 한국 및 일본 식품 납품중임
 - 위생 증명서 (Health Certificate) 및 기타 서류 관련 주의사항
 - 위생 증명서 상 기입된 제품의 정보와 실제 제품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해야 함
 - 위생 증명서 상에 찍힌 (수출국 관련 기관에서 발행 된) 도장의 모양이 잘 보이도록 찍어져야 함 (서류 위조의 오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 서류상 HS 코드 및 품목 코드가 불일치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벌금이 있을 수 있음
- 원산지 증명¹⁴⁾
 - 한-EU FTA 발효로 EU로 수출시 한국 식품이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를 무역 서류에 함께 첨부해야 함

14) 참고자료: KATI.net, aT포커스 7월호 '한-EU FTA에서 특혜관세 받기 위해서는' 참조

- 건당 6천유로 초과 물품은 한국 관세청에 원산지인증수출자로 등록된 업체만 원산지 증명서를 스스로 발급할 수 있음(6천유로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인증업체가 아닌 경우에도 발급가능)
- 수출시 상업 서류에 원산지 증명 문구를 넣어서 작성하는 것으로 특정 양식은 없음
- EU 및 EFTA에서 요구되는 원산지 증명서는 Origin Declaration(원산지 신고서)라고 불림
-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EU로 수출되는 물건의 경우) 수출자 자율 발급제임¹⁵⁾
- 원산지인증수출자는 현재 한국의 5개 본부 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및 평택 직할 세관에서 신청 가능
- 원산지 판정기준
 - 한-EU FTA는 특혜원산지 판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¹⁶⁾, 실질적 변형기준¹⁷⁾ 등 각 품목에 대한 개별적 원산지 판정기준 등을 규정함 (특정 품목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협정문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외교통상부 FTA 포털 및 관세청 FTA 포털’에서 EU CN 코드 및 상품명을 넣어 검색 가능)

품목 (수산물)	역내에서 어획된 것 (완전생산기준)
수산가공품 (16류)	완전 생산기준 (* 어묵(HS 160420)은 원산지 기준 면제물량 있음)
양식수산물	완전 생산기준

● IUU (불법, 비보고, 비규제)¹⁸⁾

- 관련 법규: Council Regulation EC N. 1005/2008,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010/2009

15)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상업 송장 (Invoice) 및 관련 서류에 당해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및 서명하여 사용하는 것

16) 원재료부터 완전히 한 국가에서 생산, 최종 가공공정이 수행된 국가의 원산지를 부여.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경우, 역내에서 충분한 작업 및 가공을 거쳐 획득한 제품(materials have undergo 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in the party)은 실질적 변형기준에 의거,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주요 공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

17) 세번변경기준(HS 2단위, 4단위, 6단위 기준), 부가가치 기준(제품 가공과정에서 일정 수순이하의 역외산 재료를 사용해야 함), 주요공정기준(특정한 공정 -화학반응, 정제공정, 블랜딩 공정 등-을 거쳐 생산된 경우 원산지 인정

18) IUU 관련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수산물안전부에서 확인 가능함
https://www.nfis.go.kr/dataroom/D_eu.asp

- EU는 2008년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IUU -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로 어획한 수산물 및 동 수산물을 사용한 수산가공품의 EU로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EU 관계당국에 기항하는 모든 어선과 어획물은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EU로 수산물을 수출(제 3국 경유 포함)하는 경우 어획증명서 또는 가공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2010년 1월 1일 이후 EU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2010년 1월 1일 그 이전에 어획한 수산물은 제출할 필요가 없음)에 대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다는 어획증명서 또는 가공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⁹⁾
- EU에서는 허가받은 선박에서 잡힌 수산물 및 동 수산물을 사용한 수산가공품의 경우만 합법적으로 수입을 허가 하고 있음
- 담수산 및 대부분의 양식수산물 등을 제외한 HS 코드 03류 및 1604 및 1605류는 모두 발급받아야 수출 가능
- 한국 농림수산물식품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소속 각 지원(13개소)에서 관련 증명서 신청 및 발급
- 어획증명서 또는 가공증명서와 별도로 작성한 ‘운송정보²⁰⁾’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관련 사이트 및 EU CN 코드 및 통계자료

기관	관련 정보	주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 전반의 수산물 관련 제도	http://ec.europa.eu/fisheries/ctp/index_en.htm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 CN 코드 및 관세율 검색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동물 질병 정보	http://ec.europa.eu/food/animal/liveanimals/aquaculture/Part2Annex4Directive2006.pdf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IUU 규제 관련 정보	http://ec.europa.eu/fisheries/ctp/illegal_fishing/index_en.htm
프랑스 세관	관세 정보 및 뉴스	http://www.douane.gouv.fr/default.asp
네덜란드 세관	관세 정보 및 뉴스	www.vwa.nl

19) 우리나라는 ‘수산물 품질 검사원’에서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발급을 하고 있다
(참고자료: http://www.foodsafety.go.kr/board/boardList.fs?bbsId=2009061600099&board_idx=84&idx=16847)

20) ‘운송정보’ 서류는 EC No. 1005/2008 Annex 2의 Transport details 참고할 것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8:286:0001:0032:EN:PDF>)

기관	관련 정보	주소
한국 FTA포털	한-EU 관련 FTA 정보	http://fta.customs.go.kr/
한국 수산물안전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수출입 정보	https://www.nfis.go.kr/index_main.asp
한국 관세청	EU CN 코드 및 관세율 검색	http://www.customs.go.kr/

● 프랑스 수산물(양식 포함) 수입현황

- 프랑스에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을 수출하는 주요국은 EU 회원국들로 상위를 차지하며(1위 ~ 10위), 다음으로 중국, 태국, 베트남 그리고 인도 등이 차지함

(단위: 천 달러)

순위	2008		2009		2010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1	네덜란드	539,378	영국	574,010	영국	618,838
2	영국	528,857	네덜란드	479,934	덴마크	531,543
3	덴마크	521,145	덴마크	485,616	네덜란드	500,632
4	스페인	440,768	스페인	459,502	스페인	499,407
5	스웨덴	320,249	스웨덴	343,946	스웨덴	464,966
기타	중국	151,079	중국	155,544	중국	170,879
	태국	111,736	태국	120,539	태국	133,049
	한국	10,065	한국	13,288	한국	8,137
합계		6,032,819		5,779,542		2,769,059

자료: GTIS

(* HS code가 2단위 '03', '16' 등으로 시작하는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의 프랑스 수입량임)

2. 품목의 수입정보

■ 관세정보

- HS 코드 (해당국 수입 시 적용되는 코드)

품목		HS 코드	EU CN 코드 ²¹⁾
활	넙치	030199	0301 99 80 - 기타
냉동	넙치	030331	0303 29 00 - 넙치류(플루로 넥티대, 바디대, 사이노글로시대, 솔레이대, 스크프탈미대 및 시타리대), 간과 어란 제외
			0303 31 -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 ·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 ·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
			0303 39 70
			0303 31 10 - 그린란드 halibut 종
건조	멸치	030559	0305 59 50 - 멸치(앵그로리스 종)
			0305 63 00 - 멸치(앵그로리스 종)
굴	활	030710	0307 10 10 - 굴(산 것/오스트레아 속/껍질포함 40그램 이하)
	냉동 건조	030710	0307 10 90 - 굴 기타
활 신선	전복	030791	0307 91 00
냉동, 건조, 염수장	바지락	030799	0307 99 18
조제 통조림	굴	160590	1605 -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갑각류 ·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1605 40 00 - 기타 갑각류
붉은대게살 (밀폐용기)		160510	1605
붉은대게살 (냉동)		030614	1605
건조 (마른)	미역	121220	0511 91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생산품 및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다시마	121220	
조미김		210690	2106 90 - 기타

- 관세율 (한국 및 경쟁국 관세율)²²⁾

품목		HS 코드	한국	태국	중국
활	넙치	030199	13.3% (EU 양허: 3년)	5.6 ~ 12.5%	5.6 ~ 12.5%
냉동	넙치	030331	0~6.7% (EU 양허: 3년)	2.6 ~ 5.5%	2.6 ~ 5.5%

21) HS 코드와 일치하는 EU CN 코드는 상품의 종류 및 성분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2) 참고자료: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

품목		HS 코드	한국	태국	중국
건조	멸치	030559	0~7.5%(EU 양하: 0-3년)	6.50%	6.50%
굴	활 냉동 건조	030710	Free	0	0
		030710	6.7% (EU 양하: 3년)	3.1%	3.1%
		030710			
활 신선	전복	030791	8.2%(EU 양하: 3년)	3.8%	3.8%
냉동, 건조, 염수장	바지락	030799	8.2%	3.8%	3.8%
조제 통조림	굴	160590	0	7%	7%
붉은대게살 (밀폐용기)		160510	0	2.80%	2.80%
붉은대게살 (냉동)		030614	0	2.80%	2.80%
건조 (마른)	미역	121220	0	-	-
	다시마	121220			
조미김		210690	0	12.10%	12.10%

* 검색시점의 위 관세율(한국) 적용 기간 (2011년 7월 1일~2011년 12월 31일)

* 태국, 중국의 관세율 적용 기간 (2009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 관세율 적용 조건 및 서류 (원산지 증명서)²³⁾

- 2011년 7월1일부터 발효한 한-EU FTA 협정에 의해 새로운 관세율 적용(즉시 관세철폐 및 단계별 철폐)
- 한-EU FTA 발효와 함께 EU로 수출시 우리 식품이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를 무역 서류에 함께 첨부해 EU 세관 당국에 제출해야 함
 - 건당 6천 유로 초과 물품은 관세청에 원산지인증수출자로 등록된 업체만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음
 - 수출시 상업 서류에 원산지 증명 문구를 넣어서 작성하는 것으로 특정 양식은 없음
 - EU 및 EFTA에서 요구되는 원산지 증명서 : Origin Declaration(원산지 신고서)
 -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임
 - EU 수입자가 수입신고 당시에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통관 2년 이내에 사후신청 허용

23) 출처: KATI.net

-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 (EU로 수출되는 물건의 경우) 수출자 자율 발급²⁴⁾
- 한국 5개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및 평택 직할 세관에 신청 가능
- 원산지 증명이 의심되는 경우,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요건 충족여부 검증을 요청할 수 있음 (간접증명방식)
- 원산지 증명서는 송장 신고서 (Invoice Declaration) 방식 임

〈수출자 송장의 원산지 문구 작성의 예〉²⁵⁾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s _____ (인증수출자번호)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_____ (원산지) preferential origin.”
 “이 서류 (세관인증번호²⁶⁾ _____)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 _____²⁷⁾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 품목의 수입요건 및 주의사항

● 수입요건

- 한-EU FTA 협정문에 의하면 ‘위생 및 식물위행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SPS agreement),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세계동물보건기구 (the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OIE) 및 국제식물보호 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의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수입 당사자가 수출 당사자 또는 그 일부의 동물 (또는 식물) 위생 상황에 관하여 내린 결정에 근거하여 수출 당사자 또는 그 일부에 부과될 수 있다’라고 규정함²⁸⁾
- 관련 법률: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251/2008
 - Council Directive 2006/88/EC를 기본으로 하여 수산물(양식 포함) 및 수산가공을

24)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상업 송장 (Invoice) 및 관련 서류에 대해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및 서명하여 사용하는 것

25) 한-EU FTA 협정문 부속서 I, 제 15조상에 명시되어 있음

26) 인증수출자가 이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괄호에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는 빈칸으로 둔. 단, 6천 유로 초과 수출자는 반드시 인증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27)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

28) 한-EU FTA 협정문 제 5장 위생 및 식물위행 조치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참고

제 3국에서 EU에 수입하기 위한 조건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해 다루고 있음

- 제3국에서 EU로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국경 검역소를 통과 및 수출국에서 발행된 위생검역증명서 (Health Certificate)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함

● 수입금지 품목 여부

- 관련 법률: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251/2008, Commission Regulation (EC) No 719/2009²⁹⁾
- 현재 한국산 살아있는 수산물 (양식 포함)의 대 EU 수출은 금지되어 있음³⁰⁾

참 고 대 EU 살아있는 수산물 (양식 포함) 수출 가능한 제 3국가 리스트³¹⁾

국가	수출 가능 수산물			기타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	
Australia (호주)	○			모든 종류의 어류 수입 가능
Brazil (브라질)	○			수입 가능한 어류 한정되어 있음
Canada (캐나다)	○			
Chile (칠레)	○			모든 종류의 어류 수입 가능
China (중국)	○			수입 가능한 어류 한정되어 있음
Colombia (콜롬비아)	○			
Congo (콩고)	○			
Cook islands (쿡아일랜드)	○	○	○	
Croatia (크로아티아)	○			모든 종류의 어류 수입 가능
Hong Kong (홍콩)	○			수입 가능한 어류 한정되어 있음
India (인도)	○			
Indonesia (인도네시아)	○			모든 종류의 어류 수입 가능
Israel (이스라엘)	○			모든 종류의 어류 수입 가능
Jamaica (자메이카)	○			수입 가능한 어류 한정되어 있음
Japan (일본)	○			

29) EC No 1251/2008의 Annex III 부분에 대해 개정. Annex III에서는 살아있는 수산물 (양식 포함)에 대해 EU로 수출이 가능한 제 3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30) 관련 EU legislation: Directive 91/496/EC, Directive 96/93/EC, Decision 2001/183/EC, Decision 2002/878/EC, Decision 2003/466/EC, Decision 2004/453/EC, Directive 2006/88/EC, Decision 2007/275/EC, Decision 2008/946/EC, 1251/2008/EG regulation, 2009/177/EG decision

31) 출처: Commission Regulation (EC) No 719/2009, Annex III

국가	수출 가능 수산물			기타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	
Kiribati (키리바시)	○	○	○	
Sri Lanka (스리랑카)	○			
Marshall Islands (마셜)	○	○	○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구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			
Malaysia (말레이시아)	○			
Nauru (나우루공화국)	○	○	○	
Niue (니우에 섬)	○	○	○	
New Zealand (뉴질랜드)	○			모든 종류의 어류 수입 가능
French Polynesia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	○	○	
Papua New Guinea (파푸아 뉴기니)	○	○	○	수입 가능한 어류 한정되어 있음
Pitcairn Islands (핏케언 제도)	○	○	○	
Palau (팔라우)	○	○	○	
Russia (러시아)	○			모든 종류의 어류 수입 가능
Solomon Islands (솔로몬 제도)	○	○	○	수입 가능한 어류 한정되어 있음
Singapore (싱가포르)	○			
South Africa (남아프리카공화국)	○			모든 종류의 어류 수입 가능
Taiwan (타이완)	○			수입 가능한 어류 한정되어 있음
Thailand (태국)	○			
Turkey (터키)	○			모든 종류의 어류 수입 가능
Tokelau (토켈라우 제도)	○	○	○	수입 가능한 어류 한정되어 있음
Tonga (통가)	○	○	○	
Tuvalu (투발루)	○	○	○	
United States (미국)	○		○	
Vietnam (베트남)	○			수입 가능한 어류 한정되어 있음
Wallis and Futuna (월리스 푸투나 제도)	○	○	○	
Samoa (사모아)	○	○	○	

● 검역 절차

- 제 3국에서 프랑스 내로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 수출하는 경우, 검역(세관) 통과 시 반드시 위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과거 한국산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의 대 EU 수출시 검역문제 발생 사례³²⁾

국가	제품명	검역 기간	검역 대상
한국	products de la pêche (수산물)	2006/11/08 ~ 2008/05/23	Cadium (카드뮴)
한국	products de la pêche (수산물)	2005/07/06 ~ 2008/06/16	Cadium (카드뮴)
한국	products de la pêche (수산물)	2010/06/02 ~ 2010/07/06	Mercure (수은)

- 2011년 EU 수입시 검역문제 발생 사례³³⁾

국가	제품명	검역 기간	검역 대상
한국	products de la pêche (수산물)	2011/01/05 ~ 현재	Infestation parasitaire (anisakis / 아니사키스) ³⁴⁾

■ 수입 바이어 및 포워드 면접조사

- 수산물 수입 바이어 : I 업체(네덜란드)
- 수입 및 통관사례
 - 꾸준히 한국산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으나 EU 규정이 점점 까다로워짐에 따라 EU 규정에 맞는 제조 공장을 찾기 힘들어져 수입 가능 품목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황. 최근 3년간 수입하고 있는 수산물의 종류는 점점 줄고 있음
- 수입자 애로사항
 - 제 3국에 대한 EU의 법규가 까다로워지고 있지만(특히 수산물(수산 가공품 포함)의 경우 수입 가능 품목이 점점 좁아지고 있음) 아직 한국내의 많은 수출 제조·가공업체의 신속한 대처가 아쉬움
 - 대 EU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위생 증명서)을 수출업체들이 잘 인지 하여야하며, 관련 기관에서도 협조가 잘 이루어져 유럽 통관 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함

32) 검역에 문제가 되었던 한국 회사명은 생략

33) 검역에 문제가 된 한국 회사명은 생략

34) 바닷물고기에 기생하는 선충

- 한국내 많은 수출기업들은 ‘제 3국 수출업체 자격’을 얻기 위해 EU의 규정에 맞는 공장의 재 설비, 관련 서류준비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재정적인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임
- 점차 제 3국가에 대한 EU의 규정이 까다로워짐을 볼 때, 우선적으로 수출 인증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기관의 지원이 필요함

● 라벨링 사례

- 수입국의 언어로 제품의 라벨이 번역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네덜란드 및 프랑스, 영국 등으로 한국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업체는 현재 4개의 언어(영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독일어)로 라벨을 제작하고 있음
- 만약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언어로 라벨에 기입하지 않을 시 수입이 불가함
- 라벨에는 수출업자 인증등록 번호도 함께 기입하고 있음

● 통관 거절 사례, 분쟁사례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대표적인 통관 거절 사례는 위생 증명서, 어획 증명서와 같은 수입 관련 서류 미비가 많음
- 한국산의 경우 어획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한국 수출업체들이 서류를 제출 하는데 어려워하고 있음
- 실제로 이러한 서류가 없어 통관 자체가 불가한 상품들이 있었고, 이 경우는 100% 반송처리 됨
- 한국은 서류구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는 매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 실제로 수산물 및 수산제품의 경우 중국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은데, 중국 회사들은 이미 위생 증명서 및 어획 증명서 발급에 대한 시스템 마련으로 통관에 문제가 없도록 서류가 갖추어 졌음
- 지금까지 특별한 분쟁 사례는 없었음

■ 운송 관련 정보

● 냉장 컨테이너 운송비

- 점점 냉장 컨테이너 운송비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운송비가 최고점 이었던 2009년과 비교해 2011년 운송비는 하락 추세임

● 주요 도착항까지의 운송기간 및 운송 주기

유럽 주요 항구	운송기간	운송주기
네덜란드 Rotterdam	약 +/- 30일	운송사 사정에 따라 틀림
독일 Hanover		
프랑스 Le Havre		
벨기에 Antwerpen		

* 운송기간 산출: 한국 부산에서 제 3국을 경유 또는 환적하지 않고 직접 운송의 경우

■ 품목의 해당국 수입통계 (최근 3년)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 수출 실적〉

(단위: 천 달러/ kg)

품목	HS 코드	EU CN 코드	프랑스 수출 실적						
			2009년		2008년		2010년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활	넙치	030199	0301 99 80	-	-	-	-	-	-
냉동	넙치	030331	0303 29 00 0303 31	-	-	-	-	-	-
건조	멸치	030559	0305 59 50 0305 63 00	-	-	-	-	-	-
굴	활	030710	0307 10 10	119	20,150	136	24,750	76	12,150
	냉동 건조	030710	0307 10 90						
활 신선	전복	030791	0307 91 00	-	-	-	-	-	-
냉동, 건조, 염수장	바지락	030799	0307 99 18	-	-	88	44,000	-	-
조제 통조림	굴	160590	1605 1605 40 00	-	-	-	-	-	-
붉은대게살 (밀폐용기)		160510	1605	1,618	218,758	1,264	177,382	976	157,463
붉은대게살 (냉동)		030614	1605	-	-	56	7,551	-	-
건조 (마른)	미역 다시마	121220	0511 91	119	19,046	-	-	115	19,222
		121220							
조미김		210690	2106 90	1,895	407,873	1,570	435,831	2,157	306,266

자료: kita

■ 참고문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www.ec.europa.eu)
 - http://ec.europa.eu/food/international/trade/index_en.htm
 - http://ec.europa.eu/food/animal/liveanimals/aquaculture/index_en.htm
 - http://ec.europa.eu/food/international/trade/third_en.htm
 - http://ec.europa.eu/food/international/trade/index_en.htm
 - http://ec.europa.eu/food/international/trade/im_cond_fish_fr.pdf
 - http://ec.europa.eu/food/animal/liveanimals/aquaculture/market_imports_en.htm
 - http://ec.europa.eu/fisheries/cfp/illegal_fishing/index_en.htm
 - <http://ec.europa.eu/food/animal/liveanimals/aquaculture/Part2Annex4Directive2006.pdf>
- 프랑스 세관
 - <http://www.douane.gouv.fr/default.asp>
 - http://www.savoie.cci.fr/download/international/notice_import_export.pdf
- 수산물 안전부
 - https://www.nfis.go.kr/index_main.asp
- 한국 FTA 포털
 - <http://fta.customs.go.kr/>
- 프랑스 잡지
 - LE MOCI '*Guide du Nouveau dédouanement à l'usage des entreprises*'
 - Charte des controles douaniers
- 참고자료(Guidance Document)
 1. Key questions related to import requirements and the new rules on food hygiene and official food controls (issued by European Commission, 2006. 05. 01)
 2. General guidance on EU import and transit rules for live animals and animal products from third countries (issued by SANCO, 2010)
 3. Labelling: competitiveness, consumer information and better regulation for the EU (issued by SANCO, 2006. 02)
 4. Journal officiel de l'Union européenne L 127